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0. 6. 백남환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0.
- 다. 상정일자 :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3. 10. 1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백남환 의원

가. 제안이유

어르신들의 사회적·문화적 커뮤니티인 경로당에서 복지증진에 힘쓰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할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고,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문을 신설함
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장흥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백남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로당의 지역봉사활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지역봉사지도원의 위·해촉 및 업무 등 신설(안 제9조)
-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는 경로당 회장에 대해 명예직으로서 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준이라기 보다는 실비 지원을 통해 운영책임자로서 자긍심 향상과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면 어르신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, 사회 일선에서 퇴직하여 상실되기 쉬운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적 유용성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견지할 수 있고, 사회적 차원에서도 어르신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으며, 봉사활동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본 안건은 고령사회로 인해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가 복잡·다양해짐에 따라 관내 어르신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및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력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
2. 도로의 교통정리, 주·정차단속의 보조,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
3. 충효사상,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
4.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
- 4의2.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
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
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18조(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
2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
3.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
③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08. 7. 24., 2018. 4. 24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2.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
3.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2. 마포구 경로당 현황

총인구수	어르신 인구수		경로당수	회원수
364,638명	55,533명	15%	158개	5,024

서울시 2023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기준

3.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조례명	조문
1	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	제10조(지역봉사지도원)
2	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	제6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
3	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	제6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
4	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	제23조(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)
5	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	제7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
6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	제6조의2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)

* 전국적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경로당회장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많으나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단독조문으로 명시한 곳을 표기하였음

*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은 보조금 지원 등의 조항에 포함